
2026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AI 실증 사업 안내서

* TRYOUT: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사업 통합 브랜드 네임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 검증한다는 의미

2026. 5.

목 차

I. 사업 개요	1
1. 사업 개요	1
II. 사업 세부내용	2
1. 주요 내용	2
2. 지원기업 선정절차	5
3. 추진절차 및 사업 운영사항	7
III. 신청서 제출안내	9
1. 사업 신청방법	9
2. 유의사항	11
3. 문의처	13
붙임자료 1 : 기술성숙도(TRL)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	14
붙임자료 2 : 신산업 창업 분야	15

I. 사업 개요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: TRYOUT AI 실증 사업 자율과제
- 협약기간: 협약일(2026. 6. 예정) ~ '26. 11. 30. (약 5개월)
- 사업목적
 - AI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산업·생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, 혁신 스타트업이 보유한 AI 기술·서비스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함
 -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, 인천을 기반으로 한 도시문제 해결형 AI 혁신모델을 발굴·확산하고자 함
- 지원규모: 10개사 내외(4억원 범위) 1개사당 평균 40백만원
 - ※ 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실증계획에 대한 예산심의결과에따라(30백만원~50백만원) 조정 될수 있음
- 협약기간: 협약일(2026. 6. 예정) ~ '26. 11. 30. (약 5개월)
- 지원내용
 - AI 기술·제품·서비스의 현장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
 - 인건비, 재료비, 장비·설치비, 데이터 구축·가공비, 시험·분석비, 사용자 테스트 비용 등 실증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
 - 도시 현안 및 시민 생활·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AI 자율과제 실증 지원
 - 신청기업이 보유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, 실증 대상, 실증 장소, 활용 데이터, 추진절차, 성과지표 등 실증 방법을 자율적으로 제안
 - 기업이 제안한 실증계획을 기반으로 AI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, 문제해결 효과성 및 가치검증(PoV) 수행
 - AI 실증 결과 기반의 기술·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화 연계 지원
 - 실증 결과를 통해 AI 모델 성능, 현장 적용성, 사용자 수용성 및 운영 안정성을 검증
 - 실증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기술·서비스 고도화

및 사업화 연계 가능성 구체화

○ AI 학습 및 실증 수행을 위한 GPU 자원 무상 제공 및 활용 교육 지원

- NVIDIA H100, V100 등 AI 연산자원 제공 및 GPU 활용, AI 모델 학습·검증, 실증 데이터 처리 등에 필요한 활용 교육 지원

□ 지원 분야

- 도시 현안 해결 및 공공서비스 혁신, 시민 생활 개선, 산업 현장 효율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AI 기반 제품·서비스 실증 과제를 기업이 자유롭게 제안

분야	주요내용	지원기업수
자율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도시 현안 및 시민 생활·산업 현장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 기술·제품·서비스 실증과제 자율 제안· AI 모델 성능, 현장 적용성, 사용자 수용성 및 운영 안정성 검증·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·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화 연계 가능성 구체화 <p>※ 실행가능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실증 대상, 실증 장소, 활용 데이터, 성과지표 등 실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	10개사 내외

※ AI 학습 데이터의 경우 재료비 항목으로 구매 가능

※ 개발된 제품(서비스)의 실제 적용 및 실증은 전담기관 협의 후 추진

II. 세부내용

1 주요내용

□ 지원대상

- 혁신기술 및 제품·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
- 창업 7년(신산업 창업 분야 10년)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

- 인천 소재 본점·연구소·공장 보유 AI 분야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, 이전 확약 기업
- 단, 관외 기업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점·연구소·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
- 기술테스트(POC)를 완료하고 AI 기술검증 단계의 스타트업 우선선정

※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
-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(공기업, 산하기관 등)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실증 목표 및 제품 등의 중복성이 있는 기관(기업), 대표자, 총괄 책임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
- 휴업중인 기업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기업
-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기업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- 수행기관, 수행기관장, 사업책임자가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·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재창업자금, 신용보증기금,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파산·회생절차(개인회생 포함) 신청자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불가능, 금융자산 압류가 진행중인자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 이행자 및 시효소멸자는 예외)
-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(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포함)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(선정 이후에도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)
- 실증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
 -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어 실증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실증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
 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실증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
 -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 - 실증 사업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

□ 신청요건

- (TRL 5단계) 기술성숙도(TRL) 5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며, 실증장소에 즉시 설치 또는 적용 가능하여야 함

구분	TRL1	TRL2	TRL3	TRL4	TRL5	TRL6	TRL7	TRL8	TRL9
주요 내용	기본원리	개념정립	개념검증	시작품	시작품	시제품	실용화		양산
	기초이론 정립	기술개념 정립	특허출원/기본성능 검증	설계제작	성능평가	설계제작 성능평가	신뢰성 평가	시제품 인증	시판/시판 후 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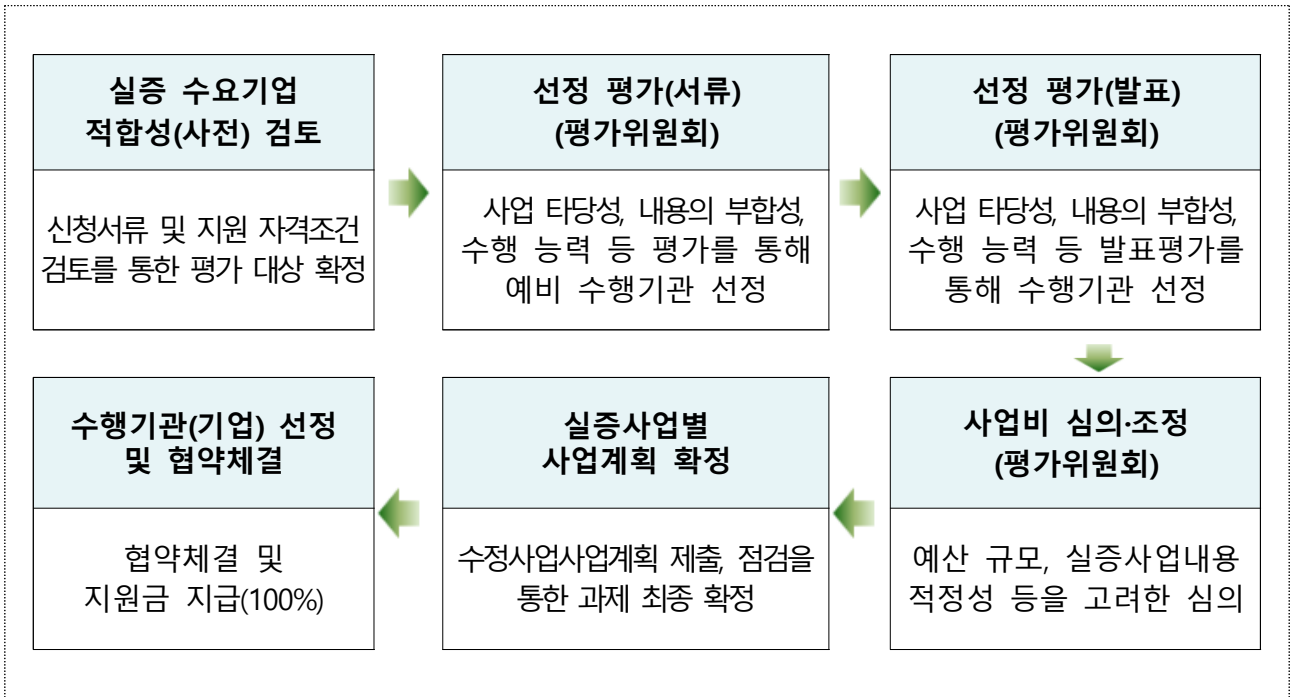
- 기술성숙도(TRL) 5단계 이상 증빙자료 제출
 - 실증대상의 최소 기능 제품(Minimum, Viable, product, MVP) 동영상, 실험 테스트 결과서,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, SW 기능동작 시험결과서, 기술개발 결과서 중 최소 1개 이상 제출
 - ※ 제3의 기관에서 인증받은 결과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자체 평가 결과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로 제출
 - ※ TRL 7단계 이상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의 최종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
- (실증 성과지표) 제품 및 서비스 검증·실증의 기술성과 상용화 관련 자체 발굴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목표 3개 이상 필수 제시
- (기업 자부담금 매칭) 참여 수행기관은 지원금의 10%이상 현금 매칭 필수

- 총사업비: 55,000,000원
- 지원금: 50,000,000원, 민간부담금 (지원금의 10% 이상)
- (예시) 지원금(90%) 50,000,000원 + 민간부담금(10%) 5,000,000원*
- *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10%(5,000,000원 / 천원 단위 절사) 이상 매칭

2

지원기업 선정절차

- (평가절차) 사업계획서의 적합성(사전) 검토 및 서면·발표 평가, 사업비 심의·조정(사업비심의위원회)을 통해 최종 확정



□ 적합성(사전) 검토

- (검토대상) 접수 '완료'된 신청기업
- (검토방법) 사업계획(신청)서,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, 중복지원 여부 조사 등을 통한 적합성 검토
- (검토위원) 인천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

□ 선정평가 (서류 및 발표평가)

- (평가대상) 적합성 검토 '통과'된 참가기업
 - ※ 실증 신청기업이 선정기업 목표수의 3배수 이상 신청 시 별도 서류평가 추진
- (평가방법)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 -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(둘째자리 반올림)까지 산정
- (평가위원)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이상의 외부위원(협력기관 등)으로 평가위원 구성 *전담기관 내부규정 적용

- (평가기준) 실증의 목표적정성, 기술혁신성, 구현가능성, 사업효과성, 확산가능성 등 평가(서류·발표 동일)

평가 항목		평가 기준	배점
서류·발표 평가	①지원기업 적합성	○ 지원기업의 재무 건전성 ○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구성 적절성	10
	②목표적정성	○ 실증 계획, 사업 추진절차, 수행방법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○ 예산편성의 적절성	10
	③기술혁신성	○ 실증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유무, 권리 확보 현황 ○ 기존 기술 대비 보유 기술의 차별성, 기술적 혁신성 및 우수성	20
	④구현가능성	○ AI 기술 구현 및 실증사업의 해결 가능성	20
	⑤사업효과성	○ 시정혁신 및 도시문제해결, 시민 편익증진 등 기여 가능성 ○ 실증 결과 기반 지역 산업 발전 가능성	20
	⑥확산가능성	○ 실증 기대효과, 파급효과 등 성장 가능성 ○ 실증 제품 및 기술의 국내·외 성과 확산 방안 및 상용화 계획 가능성·적정성	20
	가 점	○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여부 - 인천 소재 5점, 공장 4점, 연구소 3점, 그 외 2점 ○ 기술성숙도(TRL) 5단계 이상의 실증 가능 기술 보유 여부 - 5개 이상 5점, 4개 4점, 3개 3점, 2개 2점, 1개 1점	10
합계			110

※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 ④→⑤→⑥→③→②→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

□ 사업비 심의위원회 개최

- (사업비 심의·확정) 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평가의견 반영 및 실증 계획, 예산배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과제별 예산 조정·확정

※ 사업비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의 진행

□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
- (협약체결)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(예산) 확정* 및 협약체결

* 평가의견을 반영한 실증계획(절차, 방법, KPI 등) 및 사업예산 등 수정·보완

- (사업비 지급)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(기업) 실증지원금 청구에 따른 100% 실증지원금 지급
- (보증보험증권) 수행기관 및 예산 확정 후 협약체결 이전 지원금 100%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

구분	제출시기	보험금액	보험기간
이행보증보험증권	지원금 신청 시	지원금100%	협약기간 + 90일

3

추진절차 및 사업 운영사항

□ 추진절차

사업공고	5월 3주 ~ 6월 2주	[인천테크노파크] · TRYOUT AI 실증 사업 자율과제 모집공고 시행
↓		
(1단계) 서류심사	6월 2주	[인천테크노파크] 사업담당자 · 제출서류, 신청자격,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검토 ※ 선정기업수의 3배수 이상 신청시 별도 서류평가 추진 ※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검토(타기관 공문 발송)
↓		
(2단계) 발표평가	6월 3주	[인천테크노파크] ↔ 평가위원회 · 실증 참신성, 검증 신뢰성, 성과 활용성, 실증 상용화, 사업비 편성 적절성 등 실증 사업내용 평가
↓		
사업비 심의위원회	6월 3주	[인천테크노파크] ↔ 사업비 심의위원회 · 실증사업 사업비 심의 및 확정 · 예산규모, 실증사업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(조정)
↓		
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	6월 4주	[인천테크노파크] ↔ 수행기관(참여기업) · 평가결과 및 사업비 심의(조정)결과 통보 · 실증사업 사업비 확정
↓		
수행기관 지원 및 실증사업 추진	7월 1주~11월30일	[인천테크노파크] ↔ 수행기관(참여기업) ·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실증사업 추진 · 운영지원기관 자체프로그램(투자 등) 연계
↓		
과제 중간 점검	9월	[인천테크노파크] ↔ 수행기관(참여기업) · 과제 중간 점검(현장 점검)
↓		
실증사업평가 및 사업비 정산	12월 말까지	[인천테크노파크, 운영지원기관] ↔ 수행기관(참여기업) ·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· 최종성과공유회 개최

※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참가현황 및 평가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Kick-off

- (추진목적) 실증계획 공유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
- (추진시기) 협약체결 후 2주일 이내(6월 중)
- (참석대상) 전담기관, 협력파트너, 운영기관, 수행기관(실증기업) 관계자
- (주요내용) 수행과제 착수보고, 사업비 사용 및 정산절차 안내, 월간 보고, 최종보고 등 사업수행 절차 및 일정 안내 수행

□ 운영보고

- (추진목적) 실증 사업 참여 수행기관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
- (추진시기) 운영지원사 선정 후 매주 주간보고 취합 점검
- (주요내용) 수행기관 실증 진행상황, 협력파트너 실증 이슈사항 및 운영지원사 자체 프로그램 연계(판로확보, 투자유치 등) 현황 점검

□ 중간점검

- (추진목적) 수행기관 실증현황 및 완료 가능성 점검
- (추진시기) 8월 ~ 9월 중
- (주요내용) 주관기관, 운영지원사 현장 방문, 중간점검항목 확인 후 미진 기업 협약 취소, 주의 등 성공적 실증 완료를 위한 현황 확인

□ 성과공유회

- (추진목적) 26년 TRYOUT 실증 사업 성과 공유
- (추진시기) 사업종료일(11월 30일) 후 15일 이내(~12월 15일)
- (참석대상) 총괄, 전담, 협력파트너 관계자 및 수행기관 대표, 임직원
- (주요내용) 26년 실증 수행결과 공유 및 실증 우수기업 발표, 시상 등

□ 사업비 정산

- (추진목적)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증 및 정산사업비 반납절차 이행
- (추진시기) 사업종료일(11월 30일) 후 1개월 이내(~12월 30일)
- (주요내용)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회계법인이 검토하여 최종 반납금액 확정,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

□ 설문조사

- (추진목적/시기) 27년 사업계획수립 활용/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(12월 30일)
- (주요내용) 사업 만족도 조사, 보완·개선점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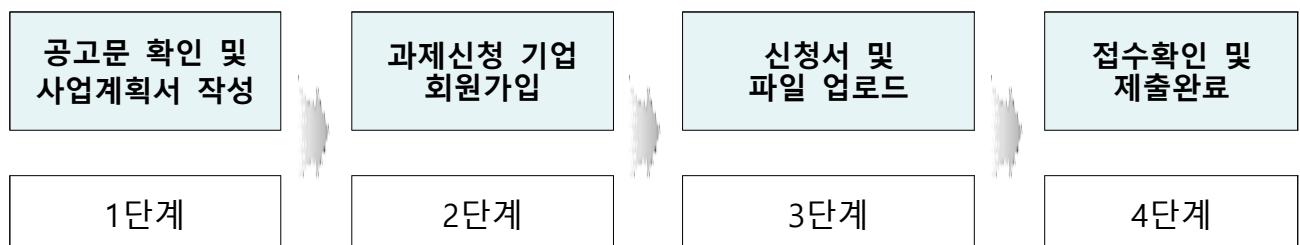
Ⅲ. 신청서 제출안내

1 신청방법

□ 사업계획(신청)서 접수 안내

- 사업계획(신청)서 다운로드 후 작성
 - 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(www.startuppark.kr)→지원사업→ TRYOUT AI 실증 사업 →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
- 공고 기간 및 접수방법
 - (공고 기간) 공고일 '26. 5. 18.(월) ~ '26. 6. 8.(월)
 - (신청서 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 '26. 6. 8.(월) 17시까지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(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)

- 실증사업 신청은 스타트업파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(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)
 - ※ 온라인신청 및 입력 안내는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(<http://startuppark.kr>) 누리집 매뉴얼 참고
- 주의사항
 - ① 누리집(<http://startuppark.kr>) '지원사업 신청'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 제출(100mb 이내 .zip파일)
 - ②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증사업 접수요망
 - ③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
 - ④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(시간이 나오는 오류화면 전체화면 캡처)과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
 - ⑤ 사업계획서-발표자료 모두 하기 제목으로 변경하여 제출 필수
[제목] 2026년 TRYOUT AI 실증 사업_기업명(과제명)



□ 제출서류 : 공문 및 사업계획(신청)서(부속서류 포함)

구분	필수 첨부 서류 목록	형태	비고
1	실증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* 별도 분리 없이 하나의 파일로 제출	한글	서식 1
2	실증 사업 발표자료 * 대용량일 경우에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 * 최대 10분 분량으로 작성(필요 시, 서체, 동영상 등 포함 제출)	PPT	자유양식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* 참여인력 전원 서명	PDF	서식 2
4	실증 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서식 3
5	사업장(소재지) 이전 및 유지확약서	PDF	서식 4
6	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	PDF	서식 5
7	청렴서약서	PDF	서식 6
8	사업자등록증 1부(공고일 이후 등록분)	PDF	-
9	법인등기부등본 1부(공고일 이후 등록분)	PDF	-
10	국세·지방세·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*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	PDF	-
11	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(2023 ~ 2025년 재무제표) *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2 ~ 2024년 재무제표	PDF	각 1부
12	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- 실험 테스트 결과서, 제품 및 서비스 실물사진, 시험성적서, 기술개발 결과서 등	PDF	-

2

유의사항

□ 적용규정

- 실증 사업 관련 수행절차, 평가, 협약체결, 사업비 집행, 성과관리 등은 「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사업 운영 요령」 적용함

□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

구분	주요내용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본 사업비 내역서는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세부 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을수 있음 · 총사업비(지원금 및 자부담금)는 본 지원 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· 본 지원 과제 수행과 무관한 예산 항목은 인정 불가하며, 정산 시에도 불인정 처리함 ·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(사업비에서 부가치세 불인정) · 최종 정산 시 총사업비(지원금 및 자부담금) 모두 정산 대상으로 함. · 사업비로 참여기업의 제품, 시스템, 서비스 구매 등 내부 거래 불가 · 사업비 편성 시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필수 ※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기준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사업 운영 요령 준용 ·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(지원금 및 자부담금 현금)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· 산정기준(안)의 용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사업의 목표, 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시 예산감액 및 조정될 수 있음. · 기재된 정산 증빙서류 외에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관(ITP)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 될 수 있음. ·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(지원금 등)는 조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비 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제출 하여야 함. 	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제에 참여하는 내부인력(기준, 신입) 인건비 편성 가능 · 인건비는 지원기간인 협약일 ~ 26.11.30.을 기준으로 편성 ·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예산 60%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도 총사업비 집행금액의 60% 이내여야함 · 대표자 인건비는 편성 불가 · 신규인력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	
유형자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형 자산 편성 불가 	
불인정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·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·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	
부적정 집행유형	구분	내용
	목적외 집행	본 과제 목적 및 내용과 관련없는 경비
	사업기업 외 집행	사업기업 외 집행
	미승인 집행	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행정절차 미 준수
	증빙 미비	증빙서류가 없거나 위조된 경우
	증빙 불인정	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
	사업비 카드 외 사용	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 사용
	현금 지출	계좌이체 없는 현금 지출
금지업종	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	

※ 실증사업 운영 요령 [별표1] 비·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

□ 실증 사업 수행 및 관리

- 사업 종료 시 실증수행 결과보고서,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, 사업비 정산 회계검토 보고서, 전담기관 요청자료 등 제출
- 전담기관에서 현장실사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이때 수행기관은 진행현황 보고서, 사업비 사용내역, 기타 요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
-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(예산)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(승인) 필요

※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 또는 승인된 건만 인정

□ 개인정보보호

-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·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
 - ※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(www.pipc.go.kr)와 개인정보보호포털(www.privacy.go.kr)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참고
-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
- 제공받은 또는 수집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파기·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

□ 기타사항

-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공공, 민간, 대학, AI 실증 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다수 선정될 시 1개 과제만 참여 가능
 - ※ 단, 공공·민간 사업에 한하여 실증자금 자부담 시 추가 참여 가능
- 실증 수행기관은 공모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실증 수행기관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사용 등록하여 협약정보관리, 집행예산관리, 사업계획 변경신청 관리, 산출물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
 - ※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관련 매뉴얼은 실증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 예정
- 실증 사업 종료 후 전담기관에서 추진하는 성과 및 실적조사(매출,

- 고용, 투자, 지재권 등)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
- 실증 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간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전담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
 - ※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현황과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함
 - 사업비 정산은 당해 회계 연도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,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(위탁정산기관)에 정산검증을 받아야 함
 - ※ 사업비 정산 절차는 실증사업 착수보고 진행 시 전담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
 -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- 시제품을 실증하는 사업특성상 실증사업명 및 사업계획서 등에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등의 문구가 아닌 실증으로 작성하여야 함
 - 실증 사업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포기 시 추후 전담기관 및 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참여제재 가능함
 - 인천 관외 기업이 실증 지원을 받는 경우 **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** 본사, 연구소, 공장 중 1개소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약속해야 하며 **미 이전시 지원금 100% 환수함**

3

문의처

사업담당 부서	문의처
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	· AI 실증 사업 담당 - 이승우 차장(032-228-1204 / swlee@itp.or.kr)

붙임자료 ① 기술성숙도(TRL)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

구분	단계	정 의	세부 설명
기초 연구 단계	1	기초 이론/실험	○ 기초이론 정립 단계
	2	실용 목적의 아이디어, 특허 등 개념 정립	○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
실험 단계	3	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	○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○ 개발하려는 부품/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
	4	실험실 규모의 소재/부품/시스템 핵심성능 평가	○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○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○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○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
시작품 단계	5	확정된 소재/부품/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	○ 확정된 소재/부품/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○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~수개 미만인 단계 ○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,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○ 의약품은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, 제조품질관리 기준) 파일럿 설비를 구축
	6	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	○ 파일럿 규모(복수 개 ~ 양산규모의 1/10 정도)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○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, 생산용량, 수율, 불량률 등 제시 ○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○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○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○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(Good Laboratory Practice, 동물실험규범)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
제품화 단계	7	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	○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○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(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) ○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○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
	8	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	○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○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,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
사업화	9	사업화	○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○ 6-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

붙임자료 ② 신산업 창업 분야

법 령

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

시행 2024. 1. 30. [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-2호, 2024. 1. 30. 일부 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세부분야

■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[별표1] 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

①	인공지능
②	빅데이터
③	5G+
④	블록체인
⑤	서비스플랫폼
⑥	실감형콘텐츠
⑦	지능형 로봇
⑧	스마트제조
⑨	시스템반도체
⑩	자율주행차
⑪	전기수소차
⑫	바이오
⑬	의료기기
⑭	기능성 식품
⑮	드론·개인이동수단
⑯	미래형 선박
⑰	재난/안전
⑱	스마트시티
⑲	스마트홈
⑳	신재생에너지
㉑	이차전지
㉒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㉓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